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3. 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7월 24일, 정부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4년 7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4.8.2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(2025.2.26) 상정, 심사, 의결(수정가결)

제42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3.6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축조심사, 찬반토론,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정부)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
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

퇴직 등으로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최선영)

현행법 제17조는 어장정화·정비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선박과 기술인력, 자본금 및 시설·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코로나19에 이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이 인력·자본 등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.

다만, 개정안은 제재처분 유예의 대상으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'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상공인 외의 유예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논의

와 보완이 필요해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조정태 위원)

적용대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유예처분 대상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”으로 수정하여 의결함.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부대의견

없음

9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10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:

1.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3. 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

적용대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유예처분 대상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).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“등이”를 “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.	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.
1.2. (생략)	1.2. (현행과 같음)	1.2. (개정안과 같음)
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3. ----- ----- ----- <u>다만,</u> <u>「소상공인기본법」</u> <u>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</u> <u>등록 기준에 미달하</u> <u>는 등 대통령령으로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및 「중소기업기본 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-----

	<u>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	4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· 도지사는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나 제2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.	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 준에 미달하게 된 <u>경우</u> <단 <u>서 신설</u> >	3. ----- ----- <u>경우. 다</u> <u>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</u> <u>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</u> <u>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</u> <u>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</u> <u>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</u> <u>외로 한다.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